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홍기원·복기왕·주철현

박희승 · 송옥주 · 양부남

윤종군 • 박상혁 • 문진석

한준호 · 김병기 · 허 영

문금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,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현행 「소득세법」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, 세금 중과,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규제지역별지정 효과가 혼재,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.

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,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

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규제 목적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칭 변경(안 제63조· 제63조의2 등)
 - 1) 현행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명칭을 변경함.
 - 2)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지정지역과 현행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기능을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73호),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7 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 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 후단 중 "투기과열지구"를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, "조정대상지역"을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로 한다.

제63조의 제목 중 "투기과열지구"를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투기과열지구로"를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(이 하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라 한다)로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투기 과열지구는"을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"을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는"으로 하 며.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투기과열지구를"을 각각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"로 하고. 같은 항 후단 중 "투기과열지구"를 각각 "부동산과 리지역 2단계"로 하며. 같은 조 제4항 중 "투기과열지구"를 각각 "부 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 하고. 같은 조 제5항 중 "투기과열지구를"을 각각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"투기 과열지구로"를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"로, "투기과열지구"를 "부동산 관리지역 2단계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투기과열지구"를 각각 "부 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투기과열지구로"를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"로. "투기과열지구"를 각각 "부동산관리지역

2단계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"투기과열지구"를 각각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, "투기과열지구를"을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"투기과열지구"를 각각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 한다.

제63조의2의 제목 중 "조정대상지역"을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로 하 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"을 "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"으 로, "조정대상지역"을 각각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"을 "부동 산관리지역 1단계는"으로 하고.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.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조정대상지역"을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 로 하고. 같은 조 제3항 중 "조정대상지역"을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"조정대상지역"을 각각 "부 동산관리지역 1단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조정대상지역"을 각 각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"조정대상 지역"을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중 "조정대상지역"을 각각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"조정대상지역"을 각각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로 하고. 같 은 조 제9항 중 "조정대상지역"을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로 한다. 제64조제1항제1호 중 "투기과열지구"를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 하 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"조정대상지역"을 "부동산관리지역 1단계"

로 하며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호 중 "주택."을 "주택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"투기과열지구가"를 "부동산관리지역 2 단계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주택의 공급) ① (생 략)	제54조(주택의 공급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	2
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입주	
자자격, 재당첨 제한 및 공급	
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	
아야 한다. 이 경우 제63조제1	
항에 따른 <u>투기과열지구</u> 및 제	부동산관리지역 2단
63조의2제1항에 따른 <u>조정대상</u>	<u>계 부</u>
<u>지역</u> 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	동산관리지역 1단계
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	
자격,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	
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	
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	
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	
정할 수 있다.	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63조(<u>투기과열지구</u> 의 지정 및	제63조(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의
해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	지정 및 해제) ①
시 ·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	
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	
거정책심의위원회(시 · 도지사	
의 경우에는 「주거기본법」	

제9조에 따른 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의 심의를 거쳐일정한 지역을 <u>투기과열지구로</u>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투기과열지구는</u> 그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·군·구또는 읍·면·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, 택지개발지구(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)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·주택가격·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

부동산관리
지역 2단계(이하 "부동산관리
지역 2단계"라 한다)로
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는
<u>.</u>
②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는

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 야 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 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, 국토 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 를 관할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 장에게,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 를 관할하는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 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 게 하여야 한다.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는 <u>투기과열지구</u>에서 제 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<u>투기과열지구</u> 지정을

③
<u>부동산관</u>
리지역 2단계를
<u> </u>
산관리지역 2단계를
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
,
부동산관리지역
2단계
<u>부동산관리지</u>
역 2단계
,
4
부동산관리지역 2단계
H 드 기 키 키 어 그
<u>부동산관리지역 2단</u>

해제하여야 한다.

-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<u>투기과열지구를</u>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가 <u>투기과열지구를</u> 지정하거나 해제할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<u>투기과열지구로</u>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<u>투기과열지구</u> 지정의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검토 결과 <u>투기과열지구</u>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<u>투기과열지구</u>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⑦ <u>투기과열지구로</u> 지정된 지역의 시·도지사, 시장, 군수

<u>계</u>
⑤
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
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
6
<u>부동산관리지역 2</u>
단계로
<u>부동산관</u>
리지역 2단계
부동산관리지
역 2단계
부동산관리지역 2단계
⑦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

또는 구청장은 <u>투기과열지구</u>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 사에게 <u>투기과열지구</u>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⑧ 제7항에 따라 <u>투기과열지구</u>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투기과열지구</u> 지정의 해 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<u>투기과</u> 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.
-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 과 <u>투기과열지구</u>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에는 지체 없이 <u>투기과열지구</u>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.

	<u>부동산관</u>
리지역 2단계 -	
	<u>부동산관</u>
리지역 2단계 -	
8	<u>부동산관리</u>
지역 2단계	
	부동산관리지
역 2단계	
	<u>부동산관리지역</u>
2단계를	
9	
부동산관리지역	2단계
	- 부동산관리지
역 2단계	
	<u>.</u>

제63조의2(<u>조정대상지역</u> 의 지경	સ O
및 해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	<u>></u>
다음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ㅎ</u>	<u>케</u>
<u>당하는</u>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	<u>Ċ</u>
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겨	()
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선	
의를 거쳐 <u>조정대상지역</u> (이	카-
" <u>조정대상지역</u> "이라 한다)으로	그
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제1호</u>	<u> </u>
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	<u>)</u>
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🤉	
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급	근
·구 또는 읍·면·동의 지역	크
단위로 지정하되, 택지개발지	구
(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	3
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胃	탈
한다)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그	己
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	<u>`</u>
있다.	

- 1. 주택가격, 청약경쟁률, 분양 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 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
- 2. 주택가격, 주택거래량, 미분 <삭 제>

세63조의2(부동산관리지역 1단계
의 지정 및 해제) ①
<u>주택</u> 분양 등이
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
<u>가 있는</u>
<u>부동산관리지역 1</u>
단계 부동산관리지역
1단계
부동산관리
지역 1단계는
<u>.</u>
<u><삭 제></u>

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·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 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 역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<u>조정대상지역</u>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 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 다.
- 1. ~ 3. (생략)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<u>조정대상지역</u>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<u>조정대상</u>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, 그 <u>조</u> 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<u>조정대상</u>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.

②
부동산관리지역 1단계
·.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
부동산관리지역 1단계
④ <u>부동산관</u>
리지역 1단계
<u>부동산관리지역 1단계</u>
<u></u>
동산관리지역 1단계
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<u>조정대상</u>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조정대상지역</u>의 지정을 해제하 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<u>조정대상지역</u>
 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
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
 다. 이 경우 "지정"은 "해제"로
 본다.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期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⑧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

(5) <u>부동산관</u>
리지역 1단계
-부동산관리지역 1단계
,
⑥ <u>부동산관리</u>
지역 1단계
⑦
부동산관리지역 1
<u>단계</u>
부동산관리
지역 1단계
부동산관리지역
1단계
부동산관리지역 1단계
⑧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

지역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
·군수·구청장은 <u>조정대상지</u>
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
가격이 안정되는 등 <u>조정대상</u>
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
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
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
를 요청할 수 있다.

⑨ 제8항에 따라 <u>조정대상지역</u>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64조(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) 기 사업주체가 건설·공급하는 주택[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·자격·지위 등을 말한다)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 101조에서 같다]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(매매·증여나 그 밖에 권

부동산관리지역 1단계
 제64조(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) ①

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,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. 이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・공 급되는 주택
- 2.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. 다만, 제63조의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.
- 3.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. 다만,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

1. <u>부동산관리지역 2단계</u>
2.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
<u>주택</u> <u><단서 삭제></u>
3
<u>부동산</u> <u>부동산</u> <u>관리지역 2단계가</u>

의 택지에서 건설·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 외한다.

4. • 5. (생략)

② ~ ⑦ (생 략)

<u>.</u>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